

研究論文

장서각 소장의 탄일 받기에 대한 고찰

이지영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인문학부 조교수, 국어학 전공
zeezero@aks.ac.kr

I. 머리말

II. 기본적 검토

III. 상차림에 대한 검토

IV. 맺음말

I. 머리말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는 다양한 유형의 발기들이 다수 소장되어 있으며, 이들에 대한 학계의 연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왔다.¹⁾ 이 글은 이들 중 왕실의 탄일 상차림의 면모를 살필 수 있는 발기를 대상으로 그 성격과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²⁾

장서각에 소장되어 있는 탄일 발기에 대해서는 한복진·이성우에서 이미 검토가 이루어진 바 있다.³⁾ 이 연구는 장서각에 소장되어 있는 발기 18건을 대상으로 하여 음식의 종수와 고임 높이, 그리고 음식을 열거하고 비교한 연구이다. 이 연구에서는 “고종 탄일”로 분류한 8건, “순종 탄일”로 분류한 5건, “그 밖의 분 생신”으로 분류한 5건을 대상으로 비교하였는데, 이 목록에서는 재고되어야 하는 점이 있다.

첫째, 탄일 발기이지만, 목록에서 빠져 있는 경우가 있다. 고종의 탄일 발기인 <신희칠월십육일역만세탄일낮것상불기>(등록번호 [1330]), 순종의 탄일 발기인 <병오이월초팔일천만세동궁마마탄일진어상스찬상불기>(등록번호 [1319]), 영친왕의 탄일 발기인 <무술구월이십오일진어상순님상불기>(등록번호 [1310])가 그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이들 발기를 연구 대상에 포함시킨다. 둘째, 이 연구에서 검토된 발기 중 탄일상으로

- 1) 발기류에 대한 서지적 검토는 유교의례 관련 한글문헌에 대한 연구인 김봉좌(2011)에서 이루어진 바 있다. 최근 김향숙(2012)에서도 장서각 소장의 음식 발기류에 대한 서지적 특징이 검토된 바 있다. 음식 발기에 대한 일반적인 검토는 이성우(1988)를 참조할 수 있다. 김봉좌, 「조선시대 유교의례 관련 한글문헌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2011); 김향숙, 「장서각 소장 발기류의 서지적 특징」, 『인문학자가 차린 조선왕실의 식탁』(한식세계화를 위한 조선왕조궁중음식고문헌 심포지엄 발표문)(2012), 85-98쪽; 이성우, 「朝鮮朝의 宮中飲食件記에 관한 考察」, 『한국식문화학회지』 3권 1호(1988), 29-49쪽.
- 2) 이 글은 2012년 7월 11일에 열린 한식세계화를 위한 조선왕조궁중음식고문헌 심포지엄에서 발표된 것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이 자리에서 음식 발기류에 대한 연구는 이 글 외에도 두 편이 더 발표되었다. 김향숙(2012)은 음식 발기류에 대한 서지적 검토이고, 박보연(2012)은 음식 발기류에 나타난 음식명에 대한 고찰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음식 발기류에 대한 서지적 검토나 음식 발기류에 나타난 음식명에 대한 고찰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본고에서는 하지 않는다. 김향숙(2012)에서는 음식 발기류의 목록과 간단한 형태 서지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 이 연구에서 제시된 목록에서 발기명은 일부 오류가 있으므로 인용에 주의를 요한다. 박보연, 「장서각 소장 음식 발기에 나타난 음식명에 대한 고찰」, 『인문학자가 차린 조선왕실의 식탁』(한식세계화를 위한 조선왕조궁중음식고문헌 심포지엄 발표문)(2012), 151-159쪽.
- 3) 한복진·이성우, 「朝鮮朝 宮中 誕日床 발기의 分析的 研究」, 『한국식문화학회지』 4권 1호(1989), 21-37쪽.

표1-장서각 소장 탄일 발기 목록

연번	관련 인물	등록번호	발기명	날짜
1	고종	[1350]	경조칠월이십오일천만세탄일진어상불기	1900. 7. 25.
2		[1334]	경조칠월이십육일후물니진어상불기	1900. 7. 26.
3		[1337]	임인칠월이십오일억만세탄일진어상스찬상불기	1902. 7. 25.
4		[1275]	계묘칠월이십오일억만세탄일진어상스찬상불기	1903. 7. 25.
5		[1339]	갑진칠월이십오일억만세탄일진어상불기	1904. 7. 25.
6		[1335]	병오칠월이십오일억만세탄일진어상스찬음식불기	1906. 7. 25.
7		[1325]	병오칠월이십오일억만세탄일진어상스찬상불기	1906. 7. 25.
8		[1330]	신해칠월십육일억만세탄일낮것상불기	1911. 7. 16.
9		[1351]	신해칠월십육일만수성절탄일낮것상불기	1911. 7. 16.
10	순종	[1323]	병오이월초팔일천만세동궁마미탄일진어스찬상불기	1906. 2. 8.
11		[1318]	병오이월초팔일천만세동궁마미탄일진어상스찬상불기	1906. 2. 8.
12		[1319]	병오이월초팔일천만세동궁마미탄일진어상스찬상불기	1906. 2. 8.
13		[1347]	병오이월초구일천만세동궁마미탄일후물니진어상불기	1906. 2. 9.
14		[1349]	계특이월십팔일동궐마미탄일진어상불기	1913. 2. 18.
15	영친왕	[1310]	무술구월이십오일진어상손님상불기	1898. 9. 25.
16		[1328]	기희구월이십오일천백세아기시성신어상손님상불기	1899. 9. 25.
17		[1329]	임인구월아기시성신조반상진어상불기	1902. 9.
18		[1346]	병오구월이십오일영친왕천백세성신음식진어상불기	1906. 9. 25.
19	귀비 염씨	[1352]	임인십일월초오일순비작가성신음식불기	1902. 11. 5.
20		[1353]	병오십일월초륙일귀비마미천백세성신진어상불기	1906. 11. 6.

보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순종의 탄일 발기로 분류된 〈순종효황제탄일 접대건〉(등록번호 [1315])이 바로 그것이다. 이 발기는 1937년경 작성된 것으로서, 순종 사후 순종의 탄일을 기리며 접대한 내·외빈의 명단을 열거하고 있다. 따라서 순종의 탄일과 관련되기는 하지만 그것이 탄일 상차림과 관련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이 글에서는 이 발기를 연구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에 따라 이 글에서 다루게 되는 탄일 발기는 모두 20건으로서⁴⁾,

4) 탄일과 관련되기는 하지만, 탄일 당일의 상차림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다음의 발기들은 이 연구에서 다루지 않기로 한다. 이들은 대체로 탄일과 관련하여 사찬하는 내용이거나, 존호를 올리는 의식과 관련된 경우이다. 〈병술십이월이십일진찬도감스찬후오신불기〉[1268], 〈명희정월진찬시너빈즈비관왜반기불기〉[1354], 〈명희정월십삼일존호시진어스찬상불기〉[1321](이상 신정 왕후의 탄일 발기), 〈임진구월이십오일진찬시도감스찬후오신불기〉[1289](명성황후의 탄일 발기)

왕실에 올리는 음식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날짜와 대상이 분명히 확인되는 것들이다.⁵⁾ 구체적으로는 고종(高宗, 1852-1919, 재위 1863-1907)의 탄일 상차림을 볼 수 있는 9건, 순종(純宗, 1874-1926, 재위 1907-1910)의 탄일 상차림을 볼 수 있는 5건, 영친왕(英親王, 1897-1970)의 탄일 상차림을 볼 수 있는 4건, 귀비 엄씨(1854-1911)의 탄일 상차림을 볼 수 있는 2건이다. 이들 목록은 표1과 같다.⁶⁾

그간의 궁중 음식 발기에 대한 연구는 주로 식품 연구 분야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구체적인 음식의 비교에 중점이 두어졌다. 그러나 발기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야 하는 사항은 단지 음식 혹은 음식명에 대한 고찰에 머무르지 않는다. 왕실의 탄일 상차림을 보여주는 발기는 음식을 접대하는 대상을 신분에 따라 순서대로 제시하며, 그에 따른 음식을 구별하여 열거한다. 따라서 왕실에 올리는 음식의 구체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그들의 신분 혹은 신분 변화에 따른 다양한 양상을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도 주목할 만하다.⁷⁾ 이 글에서는 이러한 사항에 유의하며, 다음과 같은 점을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동일한 인물에 대한 탄일 상차림이 여러 발기로 기록될 경우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는 점이다. 특히 같은 날짜로 기록된 발기의 경우 그 차이는 무엇인가 하는 점도 살펴야 할 부분이다. 이에 대한 논의는 II장에서 이루어진다. 둘째, 상차림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이다. 이에 대해서는 서열에 따른 상차림의 구분과 이에 따른 음식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비교하여 살펴볼 것이다. 이에 대한 논의는 III장에서 이루어진다.

5) 다음의 발기들도 이 글의 논의 대상에서는 일단 제외하였다. <경조구월십칠일낮것진어상불기>[1342], <신희구월십칠일진어상불기>[1344], <감진구월십칠일진어상불기>[1348], <병오구월십칠일경축진어상불기>[1340]. 이들은 동일한 날짜로 반복되고 있으며, 그 내용도 탄일 발기들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탄일 발기로 추정되나, 그 대상이 누구인지 분명하지 않다.

6) 이 글에서 발기와 관련된 모든 날짜는 음력이다. 양력인 경우는 따로 표시한다.

7) 바로 이러한 점이 한복진·이성우(1989)와 이 글의 주된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II. 기본적 검토

탄일 발기에는 왕실에 올리는 음식과 손님 및 신하들에게 내리는 음식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왕실에 올리는 음식이 생략되어 있거나 사찬과 관련된 부분이 소략하게 기록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전자의 경우는 [1318], [1319]처럼 원래의 발기를 옳게 적은 경우에 나타나고⁸⁾, 후자의 경우는 여러 상황을 가정해볼 수 있다. 하나는 관련 인물의 왕실 서열이 낮아 원래 참석 인원이 적었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발기의 뒷부분이 소실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이다. 표1에 제시한 20건의 발기에 대해 순서대로 살펴보기로 한다.

1. 고종의 탄일 발기

표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고종의 탄일 상차림을 볼 수 있는 발기는 모두 9건이다. 먼저 발기명을 보면, ‘천만세’(千萬世)([1350]), ‘억만세’(億萬世)([1337], [1275], [1339], [1335], [1325], [1330]), ‘만수성절’(萬壽聖節)([1351])과 같은 수식어가 있다. 이러한 수식어는 다른 발기에서는 볼 수 없는 것이다. ‘만수성절’이 고종의 탄일을 가리키는 것으로 사용된 예는 『승정원일기』의 1895년(乙未, 고종 32) 7월 25일자 기사에 처음 보인다.⁹⁾

1900년의 탄일 상차림과 관련된 발기는 2건으로¹⁰⁾, [1350]과 [1334]가 있다. 이들 발기에는 음식의 고임 높이가 기록되지 않고, 음식만 나열되어 있다.

1900년(庚子, 광무 4)의 <경즈칠월이십오일천만세탄일진어상블기>[1350]

1900년(庚子, 광무 4)의 <경즈칠월이십육일후물니진어상블기>[1334]

8) 이후 발기를 언급할 때는 등록번호로 대신하기로 한다.

9) 이 기사에는 강녕전에서 여러 대신을 소견하는 자리에서 특진관 정범조(鄭範朝)가 “만수성절(萬壽聖節)인데 성상의 체후는 어떠하십니까?”라고 여쭙었다는 기록이 보인다.

10) 1900년 음력 7월 25일은 양력으로 8월 19일이다. 이날은 만수성절로서, 고종이 중화전에 나아가 황태자가 올리는 치사와 전문을 받고 하례를 받았다. 『고종실록』 37년(1900, 庚子, 광무 4) 8월 19일(양력) 1번째 기사.

[1350]과 [1334]는 동일한 해(1900)의 탄일 상차림과 관련되지만, [1334]가 탄일 다음날인 7월 26일에 올린 후물리상이라는 점에서 구분된다. 이에 따라 [1334]는 음식의 기수와 종류가 [1350]보다 축소되어 있다. [1350]과 [1334]는 왕실에 올린 음식의 내용은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1350]은 손님이나 신하에게 내린 음식에 대해서는 기록되어 있지 않으며, [1334]는 공사청에 내린 음식만 기록되어 있다. 탄일 발기의 일반적인 양식에 비추어볼 때, 발기의 뒷부분이 소실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외에 [1350]에서는 영친왕아가시이 ‘순화자가’와 ‘군부인’의 사이에 위치하나, [1334]에서는 ‘군부인’과 ‘귀인’의 사이에 위치한다는 점에서도 차이가 있다.

1902년의 [1337], 1903년의 [1275], 1904년의 [1339]는 각각 다른 해의 탄일 상차림과 관련된 발기이다.

1902년(壬寅, 광무 6)의 <임인칠월이십오일억만세탄일진어상스찬상불기>[1337]
 1903년(癸卯, 광무 7)의 <계묘칠월이십오일억만세탄일진어상스찬상불기>[1275]
 1904년(甲辰, 광무 8)의 <갑진칠월이십오일억만세탄일진어상불기>[1339]

[1337]과 [1275]는 왕실에 올린 음식의 자세한 내용과 음식의 고임 높이가 기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손님 및 신하에게 내린 반기와 면의 종류와 수도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1339]는 왕실에 올린 음식의 자세한 내용과 음식의 고임 높이가 기록되어 있다는 점에서는 앞의 두 발기와 같지만, 손님과 신하에게 내린 경우는 ‘공사청’과 ‘궁내인’의 경우만 기록되어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1339]는 발기명의 원편에 ‘을스동 고만일척’이라 적었다가 ‘고만일척’ 부분에 줄을 그어 삭제 표시를 하였다. 이로써 이 발기가 1905년(乙巳)에도 동일하게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다만 [1339]에서는 음식의 고임 높이를, ‘진어두상, 영친왕’에게는 1척 2촌으로, ‘귀비마마, 순화자가, 군부인’에게는 7촌으로 구분하고 있다. 따라서 발기명 원편에 기록한 ‘을스동 고만일척’을 통해 [1339]를 1905년에 음식의 고임 높이만 1척으로 달리하여 다시 사용했으며, ‘고만일척’ 부분에 삭제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통해 음식의 고임 높이를 다시 조정했을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1906년의 탄일 상차림과 관련된 발기는 2건으로¹¹⁾, [1335]와 [1325]가 있다.

1906년(丙午, 광무 10)의 <병오칠월이십오일억만세탄일진어상스찬음식블기>[1335]
1906년(丙午, 광무 10)의 <병오칠월이십오일억만세탄일진어상스찬상블기>[1325]

[1335]와 [1325]는 동일한 해(1906)의 탄일 상차림과 관련되지만, [1335]는 왕실에 올린 음식의 내용과 손님 및 신하에게 내린 음식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고 [1325]는 그렇지 않다는 점에서 구분된다. [1325]는 왕실에 올리는 음식에 대해서 음식의 고임 높이에 대해서만 기록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음식의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 않다.¹²⁾ 그러나 신하에게 내리는 반기와 면의 종류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이 외에 이들 발기는 왕실 인물을 나열한 순서와 음식의 고임 높이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1335]가 ‘진어상두상’ [유형 I, 1척 3촌] ⇒ ‘의친왕 → 영친왕 → 순비마마’ [유형 II, 1척] ⇒ ‘순화자가 → 군부인’ [유형 III]으로 되어 있는 데 반해, [1325]는 ‘진어두상, 영친왕’ [1척 3촌] ⇒ ‘순화자가’ [8촌] ⇒ ‘의친왕, 귀비마마’ [1척] ⇒ ‘군부인’ [8촌]으로 되어 있다. 탄일 발기에서 서열에 따라 왕실 인물을 나열하고 그에 따라 음식의 고임 높이도 순차적으로 달라지는 것이 일반적임을 고려할 때, [1325]에서 8촌의 상을 받는 ‘순화자가’의 위치는 일반적인 것은 아니다. 또한 영친왕은 [1335]에서는 1척의 상을, [1325]에서는 1척 3촌의 상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점에서도 두 발기는 차이를 보인다.

1911년의 탄일 상차림과 관련된 발기는 2건으로, [1330]과 [1351]이 있다.

1911년(辛亥)의 <신희칠월십육일억만세탄일낫것상블기>[1330]

1911년(辛亥)의 <신희칠월십육일만수성절탄일낫것상블기>[1351]

[1330]과 [1351]에서 특이한 점은 고종 탄일과 관련된 다른 발기와 날짜가 다르다는 점이다. 다른 경우는 날짜가 모두 7월 25일로 되어 있으나, [1330]과 [1351]은 7월 16일로 되어 있다. 고종이 태어난 1852년(壬子, 철종 3)의 7월 25일을 양력으로 환산하면 9월 8일이다.¹³⁾ 1911년의

11) 1906년 음력 7월 25일은 양력으로 9월 13일이다. 이날 고종은 만수성절을 맞아 여러 대신을 소견하였다. 『승정원일기』 고종 43년(丙午, 광무 10) 7월 25일자 기사.

12) 이러한 이유로 [1325]는 음식의 고임 높이에 따른 왕실 인물의 서열에 관련된 논의에서 만 대상이 될 뿐, 음식의 내용을 비교하는 경우에는 논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양력 9월 8일은 음력으로 7월 16일이 되는데, [1330]과 [1351]은 1911년에 양력으로 지낸 고종의 탄일 잔치를 음력 날짜로 기록한 것이다.¹⁴⁾

[1330]과 [1351]은 동일한 해(1911)의 탄일 상차림, 특히 점심상[낮것상] 상차림과 관련된다. 또한 두 발기 모두 왕실에 올린 음식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데 반해, 손님이나 신하에게 내린 상에 대해서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도 같다.

그러나 이들은 몇 가지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발기명 중 ‘억만세’[1330]와 ‘만수성절’[1351]의 차이, 왕실 인물에 대해 ‘세분마마’[1330]와 ‘진어상삼상’[1351]으로 달리 지칭하고 있다는 점, [1330]은 음식의 고임 높이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1351]은 기록되어 있다는 점, 음식명 표기의 차이(‘국화엽전, 개자’[1330]와 ‘국화엽, 겨자’[1351]) 등이 그것이다. 또한 음식의 내용에도 차이가 있다. [1351]과 비교해볼 때, [1330]에는 ‘다식과, 만두과, [홍미화, 빅미화, 온빅즈송즈]연사¹⁵⁾, [홍세강반, 빅세강반, 말빅즈간정, 각식결육, [농안, 너제, [사당, 꿀병, 각식당, [싱니, 싱닐], 사과, 조홍, [넉금, 적네, [승도, 산새, 각식다식, 각식숙실과, 각식정과, 산사슈정과]가 기록되어 있지 않으며, ‘청, 초장’도 기록되어 있지 않다.¹⁶⁾ 이러한 사실을 보면, [1330]의 일부가 소실된 것으로 의심될 수 있다. 그러나 ‘세분마마, 친왕내외분’ 다음에 수정된 흔적 없이, 바로 ‘임즈술즈르판’으로 음식을 기록하고 있어 일부가 소실되었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2. 순종의 탄일 발기

표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순종의 탄일 상차림을 볼 수 있는 발기는 모두 5건이다. 먼저 발기명을 보면, 왕위에 오르기 전인 1906년에는 ‘천만세’와 ‘동궁마마’([1323], [1318], [1319], [1347])라는 수식어가, 대한제국이 망한 이후인 1913년에는 ‘동궐마마’([1349])라는 수식어가 보인다. ‘천만세’는 고종의 탄일 발기 중 1900년의 [1350]에서도 나타난다. 그러나

13) 『고종실록』 32년(1895, 乙未) 11월 3일 3번째 기사 참조.

14) 실제로 이러한 사실은 『순종실록 부록』 2권의 1911년 9월 8일(양력)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1911년 9월 8일(양력), 음력으로는 7월 16일에 태왕 전하의 탄신일을 맞아 축하를 받고 오찬을 베풀었다고 되어 있다.

15) 다른 발기에서 ‘연사과’로 되어 있으나 [1351]은 ‘연사’로 되어 있다.

16) 이러한 이유로 III. 2의 음식 비교에서는 [1330]은 비교하지 않기로 한다.

1902년부터 고종의 탄일 발기에는 ‘억만세’라는 수식어가 나타나고 ‘천만세’가 나타나는 순종의 탄일 발기는 1906년의 것이므로, 고종에 대해서는 ‘억만세’로, 순종에 대해서는 ‘천만세’로 구분하였음을 알 수 있다. ‘동궐마마’의 ‘동궐(東闕)’은 경복궁(景福宮)을 기준으로 동쪽에 위치한 창덕궁(昌德宮)과 창경궁(昌慶宮)을 가리키는 말이다. ‘동궐마마’가 나타나는 발기는 1913년의 [1349]로, 이 글의 대상이 되는 발기 중 가장 후대의 것이다. 고종과 순종에게 올리던 상을 ‘진어상’이라 하던 이전 시기의 발기와 달리, [1349]에서는 ‘덕수궁’과 ‘창덕궁’으로 고쳐 부르고 있다. 고종의 탄일인 ‘만수성절’이 발기명에 사용된 것과 달리, 순종의 탄일 발기에서는 순종의 탄일 명칭을 ‘건원절(乾元節)’로 한 것은 보이지 않는다.¹⁷⁾

순종의 탄일 발기 5건 중 4건이 동일한 해(1906)의 탄일 상차림과 관련된 발기들이다.

1906년(丙午, 광무 10)의 <병오이월초팔일천만세동궁마마탄일진어스찬상불기>[1323]

1906년(丙午, 광무 10)의 <병오이월초팔일천만세동궁마마탄일진어상스찬상불기>[1318]

1906년(丙午, 광무 10)의 <병오이월초팔일천만세동궁마마탄일진어상스찬상불기>[1319]

1906년(丙午, 광무 10)의 <병오이월초구일천만세동궁마마탄일후물니진어상불기>[1347]

[1323], [1318], [1319]는 1906년 2월 8일의 탄일 상차림과 관련되지만, [1347]은 그 다음날인 2월 9일에 올린 후물리상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¹⁸⁾ [1323]은 왕실에 올린 음식의 기수와 종류, 그리고 구체적인 음식의 내용까지 적혀 있는 데 반해, [1318]과 [1319]는 ‘월발기를 보라’고 되어 있을 뿐 이러한 내용에 대해 기록되어 있지 않다.¹⁹⁾ 다만 음식의 고임 높이는 기록되어 있다. 현재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 소장되어

17) 『순종실록』 즉위년(1907, 丁未, 융희 1) 8월 7일(양력) 5번째 기사에는 궁내부(宮內府) 대신 이윤용(李允用)이 황제의 자리에 오른 후 “황제 폐하의 탄신 경절(慶節)을 ‘건원절(乾元節)’로 고쳐” 부를 것을 상주하여 윤허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18) 이 발기는 마지막이 ‘공사청, 태자궁 승언색(承言色)[승언빛], ‘각’으로 끝나고 아무런 음식명이 적혀 있지 않아 발기의 뒷부분이 소실된 것으로 보인다.

19) 이러한 이유로 III, 2의 음식 비교에서 [1318], [1319]는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있는 순종의 탄일 발기 중 후물리상인 [1347]을 제외한다면, 1906년의 것은 [1323], [1318], [1319]밖에 없고 온전한 모습을 갖춘 발기는 [1323]뿐이라는 점에서 [1318]과 [1319]의 ‘원발기’가 [1323]일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이것은 단정하기 어렵다. 이들 발기의 표기가 다른 문제는 필사자의 탓으로 돌릴 수 있으나, 신하에게 내린 반기와 면의 총합을 기록한 부분에서 [1323]과 [1318]이 같고, [1319]는 다르며, 왕실 인물의 순서에 대해서는 [1318]과 [1319]가 같고, [1323]이 다르게 나타나는 등 고려해야 할 점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1323], [1318], [1319]는 왕실 인물을 나열한 순서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1323]이 ‘진어이상 → 영친왕’ [유형 I, 1척 3촌 ⇒ ‘의친왕 → 귀비마마’ [유형 II, 1척] ⇒ ‘순화자가 → 군부인’ [유형 III, 8촌]으로 되어 있는데 반해, [1318]과 [1319]는 ‘진어두상 → 영친왕’ [1척 3촌 ⇒ ‘순화자가’ [8촌] ⇒ ‘의친왕 → 귀비마마’ [1척] ⇒ ‘군부인’ [8촌]²⁰⁾으로 되어 있다. 다른 탄일 발기를 고려할 때, [1318]과 [1319]에 보이는 ‘순화자가’의 위치는 일반적인 것은 아니다.²¹⁾

1913년(癸丑)의 <계특이월십팔일동궐마마탄일진어상불기>[1349]

[1349]는 순종 탄일과 관련된 다른 발기와 날짜가 다르다. 다른 경우는 날짜가 모두 2월 8일로 되어 있으나, 이 발기는 2월 18일로 되어 있다. 순종이 태어난 1874년(甲戌, 고종 11) 2월 8일을 양력으로 환산하면 3월 25일이다.²²⁾ 1913년에 양력 3월 25일은 음력으로 2월 18일이 되는데, [1349]는 양력으로 지낸 순종의 탄일 잔치를 음력 날짜로 기록한 것이다.²³⁾

20) [1319]에서는 ‘영친왕’이 원래 적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군부인’ 앞에 ‘영친왕’을 추가로 써 넣었다. 여기의 설명에서는 추가로 써 넣은 ‘영친왕’은 고려하지 않았는데, 이에 대해서는 III. 1.의 그림2에 대한 설명을 참조하라.

21) 고종의 탄일 발기인 1906년의 [1325]에서도 이와 같은 양상이 나타난다.

22) 『고종실록』 32년(1895, 乙未) 11월 3일 3번째 기사 참조.

23) 실제로 이러한 사실은 『순종실록부록』 4권의 1913년 3월 25일(양력)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전하의 탄신일인 1913년 3월 25일(양력), 음력으로는 2월 18일에 종척(宗戚), 귀족 및 이왕직장관 등을 접견하고 사찬하였다고 되어 있다.

3. 영친왕의 탄일 발기

표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영친왕의 탄일 상차림을 볼 수 있는 발기는 모두 4건이다. 먼저 발기명을 보면, 1898의 [1310]에는 수식어가 전혀 없다가 1899년의 [1328]부터는 ‘천빅세’, ‘아기시’, ‘영친왕’이라는 수식어가 보인다. ‘천빅세’는 고종의 수식어인 ‘천만세’와 ‘억만세’, 순종의 수식어인 ‘천만세’와 비교된다.²⁴⁾ 영친왕의 탄일 발기에서는 영친왕에 대한 지칭을 ‘아기시’로 하다가 1906년의 [1346]부터 ‘영친왕’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고종의 탄일 발기에서 상을 받는 대상에 대한 지칭을 보면, 1903년의 [1275]에는 ‘영친왕’을 별지에 써서 나중에 붙여놓았고²⁵⁾, 1904년의 [1339]에서는 ‘영친왕’으로 지칭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보면, 영친왕에 대해서 적어도 1904년경부터는 ‘영친왕’으로 기록하였으나, 이 글의 대상이 되는 영친왕의 탄일 발기 중에는 1904년과 1905년의 것이 없으므로 발기명에서 ‘영친왕’은 1906년의 [1346]에서부터 확인되는 것이다.²⁶⁾ 따라서 영친왕은 1900년 7월 23일에 ‘영왕(英王)’으로 책봉되었음에도²⁷⁾ 발기에서는 그가 8세가 되던 1904년에서야 ‘영친왕’으로 지칭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영친왕의 탄일 발기는 손님이나 신하에게 내린 음식의 규모가 매우 소략하여 고종의 탄일 발기나 순종의 탄일 발기처럼 대규모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각 발기에서 손님이나 신하에게 내린 음식을 보면, [1310]은 안손님 10상만 기록되어 있지만 [1328]과 [1329]에 이르면 내외손님상 40상으로 규모가 확대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신하에게 내린 경우에는 [1310]에는 기록이 없다가 [1328]과 [1329]에서는 공사청, 궁내인, 유모에게, [1346]에서는 공사청, 유모, 영친왕부 승봉 이하에게도 내린다고 되어 있다.

1898년(戊戌, 광무 2)의 <무술구월이십오일진어상손님상불기>[1310]

1899년(己亥, 광무 3)의 <그희구월이십오일천빅세아기시칭신어상손님상불기>[1328]

24) ‘천빅세’는 귀비 엄씨의 탄일 발기인 [1353]에서도 보인다.

25) 후술하겠지만, 별지로 덧붙인 시기는 1903년 말에서 1904년 사이로 추정된다.

26) 후술하겠지만, 영친왕의 탄일 발기 중 1899년의 [1328]은 1900년부터 1905년까지 반복되어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발기에는 ‘아기시’를 ‘영친왕’으로 수정한 흔적은 없다.

27) 『고종실록』 37년(1900, 庚子, 광무 4) 8월 17일자 기사 참조. 음력으로는 7월 23일이다.

1902년(壬寅, 광무 6)의 <임인구월아기시싱신조반상진어상불기>[1329]
1906년(丙午, 광무 10)의 <병오구월이십오일영친왕천척세싱신음식진어상불
기>[1346]

[1329]는 다른 발기와 달리 조반상과 관련된다는 점에서 다른 발기와 차이가 있다. [1328]은 발기명의 원편에 '경주동신통동임인동계묘갑진을 스'라 적혀 있다. 이로써 1899년에 작성된 이 발기가 1900년(庚子), 1901년(辛丑), 1902년(壬寅), 1903년(癸卯), 1904년(甲辰), 1905년(乙巳)에도 반복되어 사용되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4. 귀비 엄씨의 탄일 발기

표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귀비 엄씨의 탄일 상차림을 볼 수 있는 발기는 모두 2건이다. 발기명을 보면, 귀비 엄씨는 '순비자가'[1352]와 '귀비마마'[1353]로 지칭되고 있다. 이것은 귀비 엄씨의 신분 변화와 관련된다. 원래 궁인(宮人)이었던 귀비 엄씨는 1897년(광무 1) 9월 25일에 영친왕을 낳은 후²⁸⁾ 같은 해 9월 27일에 귀인(貴人)에 봉작(封爵)되었다.²⁹⁾ 이후 1900년(광무 4) 7월 9일에 순빈(淳嬪)에 봉작되고³⁰⁾, 1901년(광무 5) 9월 3일에 순비(淳妃)에³¹⁾, 1903년(광무 7) 11월 7일에 황귀비(皇貴妃)로 책봉되었다.³²⁾ 이러한 변화에 따라 1902년의 [1352]에서는 귀비 엄씨를 '순비자가'로, 1906년의 [1353]에서는 '귀비마마'로 지칭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탄일 발기를 보면, 귀비 엄씨에 대한 지칭이 이러한 지위 변화에 정확하게 대응되지 않는다. 귀비 엄씨는 1899년의 영친왕의 탄일 발기[1328]에서 처음 '귀인'으로 지칭된다. 이 발기가 1899년부터

28) 『승정원일기』 고종 34년(1897, 丁酉, 광무 1) 9월 25일자 기사 참조. 양력으로는 10월 20일이다.

29) 『승정원일기』 고종 34년(1897, 丁酉, 광무 1) 9월 27일자 기사 참조. 양력으로는 10월 22일이다.

30) 『승정원일기』 고종 37년(1900, 庚子, 광무 4) 7월 9일자 기사 참조. 양력으로는 8월 3일이다.

31) 『고종실록』 38년(1901, 辛丑, 광무 5) 10월 14일(양력) 1번째 기사 참조. 음력으로는 9월 3일이다.

32) 『고종실록』 40년(1903, 癸卯, 광무 7) 12월 25일(양력) 1번째 기사 참조. 음력으로는 11월 7일이다.

1905년까지 반복 사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귀인’에 대한 부분은 수정이 없다. 귀비 엄씨가 순빈이 된 1900년 이후에도 여전히 ‘귀인’으로 지칭되었 으며[1350, 1334], 순비가 된 이후인 1902년의 고종의 탄일 발기[1337]에서 야 ‘순비자기’로 지칭된다[1337, 1329]. 귀비가 된 이후인 1903년의 고종의 탄일 발기[1275]에서 처음으로 ‘귀비마마’로 지칭되지만, 고종의 탄일이 7월 25일이고 귀비로 책봉된 것은 11월 7일이므로 이 발기에서 ‘귀비마마’ 는 이후에 수정된 것이다. 실제로 ‘귀비마마’는 후대에 별지에 써서 발기에 붙여놓았다. 그 이후의 발기에서 귀비 엄씨는 대부분 ‘귀비마마’로 지칭되 었지만, 1906년의 고종의 탄일 발기[1335]에서는 다시 ‘순비마마’로 지칭되 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영친왕의 탄일 발기와 마찬가지로 귀비 엄씨의 탄일 발기도 그 규모가 작았던 것으로 보인다. [1352]에는 손님이나 신하에게 내린 음식이 기록되 어 있지 않다. [1353]에는 ‘손님상, 운현, 죽동, 공사청, 영친왕궁 승봉 이하, 궁내인, 유모, 경선궁 전언색 이하, 배독, 봉독’에게 내린 음식이 적혀 있다.

1902년(壬寅, 광무6)의 <임인십일월초오일순비즈가싱신음식불기>[1352]

1906년(丙午, 광무10)의 <병오십일월초육일귀비마마천벽세싱신진어상불기> [1353]

귀비 엄씨의 탄일과 관련되면서도 그 날짜가 [1352]는 11월 5일이고, [1353]은 11월 6일이다. 『승정원일기』 고종 39년(1902) 11월 6일자 기사에 는 이날이 ‘경선궁(慶善宮)의 생신’이라고 하였다. 『순종실록』 1년(1908) 10월 16일(양력) 기사에는 “황귀비의 탄신일을 양력으로 고치도록 하였 다”는 내용과 함께 “황귀비의 탄일이 12월 25일”이라고 되어 있다. 귀비 엄씨가 태어난 1854년(甲寅, 철종 5) 12월 25일(양력)을 음력으로 환산하면 1854년 11월 6일이다. 따라서 귀비 엄씨의 탄일은 음력 11월 6일이므로, [1352]에는 그 날짜가 잘못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III. 상차림에 대한 검토

탄일 받기는 같은 음식을 받는 왕실 인물을 서열에 따라 순서대로 기록하고 이어서 그들에 올리는 음식을 열거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다. 첫 번째 상차림의 음식에 대한 기록이 끝나면, 이어서 두 번째 서열에 해당하는 왕실 인물을 열거하고 이들에 올리는 음식을 열거한다. 세 번째 유형의 상차림이 있는 경우라면 두 번째 상차림의 음식을 다 열거한 후 왕실 인물을 서열에 따라 기록하고 이어서 구체적인 음식의 내용을 적었다.³³⁾ 서열이 다르다면, 음식의 고임 높이뿐만 아니라 음식의 기와 종류의 수도 다르다. 그러나 같은 기수와 종수의 음식을 올리는 경우라 하더라도 서열에 차등을 두어야 하는 경우에는 각 인물의 지칭 아래에 음식의 고임 높이를 다르게 하여 기록하고 있다.

Ⅲ장에서는 상차림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는데, 먼저 서열에 따른 상차림의 유형을 살펴보고, 다음에는 구체적인 음식의 내용을 비교해보기로 한다.

1. 서열에 따른 상차림의 구분

탄일 받기에 나타난 상차림을 살펴보기 전에 우선 왕실 인물에 대한 지칭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아래에 열거된 지칭은 받기에 기록된 그대로 제시하되, 표기만 현대맞춤법에 맞게 바꾼 것이다.

진어두상, 진어상두상, 진어이상: 고종, 순종

덕수궁, 상감마마: 고종

동궁마마: 순종

세분마마³⁴⁾, 진어상삼상[1351]³⁵⁾: 고종, 순종, 영친왕

33) 받기에 나타난 이러한 구분을 따라 이 글에서는 상차림의 구분을 각각 유형 I, 유형 II, 유형 III으로 하였다.

34) '세분마마'는 1911년의 고종의 탄일 받기[1330]에만 나오는데, 이 받기에는 유형 I의 상차림만 기록되어 있다. 영친왕의 탄일 받기와 귀비 엄씨의 탄일 받기를 제외한다면, 고종이나 순종의 탄일 받기에서 고종, 순종과 더불어 유형 I의 상차림을 받는 대상은 1911년 이전에는 영친왕이 유일하다. 혹 귀비 엄씨가 '세분마마'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영친왕의 탄일 받기와 귀비 엄씨의 탄일 받기를 제외한다면, 귀비 엄씨는 유형 II나 유형 III의 상차림을 받았으므로 '세분마마'에 포함되기 어렵다.

진어상삼상¹³⁴⁹36): 고종, 순종, 순종의 계비인 순정효황후(純貞孝皇后) 윤씨
 창덕궁^{37):} 순종, 순종의 계비인 순정효황후 윤씨
 진어사상^{38):} 고종, 순종, 그리고 2인 아기씨,
 영친왕: 영친왕
 왕대비마마: 헌종의 계비인 효정왕후(孝定王后) 홍씨
 빈미누라, 빈마마: 순명효황후 민씨
 순화자가, 순화마마: 헌종의 후궁인 경빈(慶嬪) 김씨
 군부인: 의친왕의 부인인 연원군부인(延原郡夫人) 김씨
 귀인, 순비자가, 순비마마, 귀비마마: 귀비 엄씨
 의친왕: 의친왕
 친왕내외분^{39):} 의친왕, 연원군부인 김씨

탄일 발기에 나타난 상차림을 구분하여 음식의 기수와 종수, 고임 높이를 정리하면 표2, 표3, 표4, 표5와 같다.⁴⁰⁾

[1275]에서 ‘**영친왕**’, ‘**귀비마마**’는 별지에 써서 나중에 붙여놓은 것이다. 귀비 엄씨가 1903년(癸卯, 光武 7) 11월 7일 순비(淳妃)에서 귀비(貴妃)로 책봉된 것을 고려하면, 별지로써 수정한 것은 그 이후이다. ‘**빈미누라**’는 원래 써 있던 부분에 별지를 덧대어 삭제 표시를 한 것이다. ‘**왕대비마마**’

더구나 [1330]은 1911년 7월 25일의 고종의 탄일 발기인데, 귀비 엄씨는 1911년 7월 20일에 사망하였으므로 가능성이 없다.

- 35) [1351]의 ‘진어상삼상’은 같은 해의 기록인 [1330]에 나타난 ‘세분마마’와 같은 대상을 가리킨다. 각주 31) 참조.
- 36) [1349]의 ‘진어상삼상’은 1913년의 순종 탄일 발기에 나온다. 이 발기에서는 ‘덕수궁, 창덕궁’의 아래에 ‘진어상삼상’이라고 기록하였다. ‘덕수궁’은 당시 태왕(太王)이었던 고종을 가리키며, ‘창덕궁’은 순종을 가리킨다. 그런데 덕수궁과 창덕궁을 합하여 ‘진어상삼상’이라고 하였으므로 고종과 순종 외에 순종의 계비인 순정효황후 윤씨도 포함되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 37) ‘창덕궁’은 1913년 순종의 탄일 발기인 [1349]에만 나온다. 이 발기에서 ‘창덕궁’을 순종과 순종의 계비인 순정효황후 윤씨로 추정한 것에 대해서는 각주 33) 참조.
- 38) ‘진어사상’은 1903년 고종의 탄일 발기인 [1275]에서만 나타난다. 유형 I의 상차림에 해당되는 신분이며, 음식의 고임 높이도 1척 3촌이다. 이 글의 논의 대상인 탄일 발기에서 이러한 상차림을 받는 대상은 고종, 순종, 영친왕뿐이다. 그런데 [1275]에는 영친왕이 유형 I의 상차림이지만, 음식의 고임 높이는 1척으로 따로 분류되어 있다. 헌종의 계비이며 당시 왕대비였던 효정왕후 홍씨, 당시 세자빈이었던 순명효황후 민씨, 귀비마마는 유형 II 혹은 유형 III의 상차림을 받는 대상이었으므로 ‘진어사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낮다. 현재로서는 ‘진어사상’이 고종, 순종 외에 누구를 지칭하는 것인지 알기 어렵다.
- 39) ‘친왕 내외분’은 1911년의 고종의 탄일 발기인 [1330], [1351]에서만 나타난다. 당시 영친왕은 가례를 올리기 전이므로, ‘친왕 내외분’을 의친왕과 연원군부인 김씨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았다.
- 40) 이들 표에서 ×는 각 발기에서 해당 부분에 대한 정보가 없음을 표시하는 것이다.

표2-고종 탄일의 상차림

연번	연도 [등록번호]	상차림 구분	기수/종류	고임 높이	대상
1	1900 [1350]	I	33기/51종	×	진어두상
		II	17기/33종		왕대비마마, 빈마누라, 순화자가, 아기씨, 군부인, 귀인
2	1900 [1334]	I	28기/45종	×	진어두상
		II	17기/27종		왕대비마마, 빈마누라, 순화자가, 군부인, 아기씨, 귀인
3	1902 [1337]	I	32기/50종	1척 2촌	진어상두상
		II	22기/41종	1척	아기씨
		III	18기/34종	8촌	왕대비마마, 빈마누라, 순화자가, 군부인, 순비자가
4	1903 [1275]	I	35기/56종	1척 3촌 [1척]	진어사상 영친왕
		II	18기/33종	8촌	왕대비마마, 빈마마, 순화자가, 군부인
5	1904 [1339]	I	35기/56종	1척 2촌	진어두상, 영친왕
		II	19기/24종	7촌	귀비마마, 순화자가, 군부인
6	1906 [1335]	I	35기/56종	1척3촌	진어상두상
		II	34기/55종	1척	의친왕, 영친왕, 순비마마
		III	18기/33종	8촌	순화자가, 군부인
7	1906 [1325]	×	×	1척 3촌	진어두상, 영친왕
				8촌	순화자가
				1척	의친왕, 귀비마마
				8촌	군부인
8	1911 [1330]	I	17기/27종	×	세분마마, 친왕 내외분
9	1911 [1351]	I	34기/55종	1척	진어삼삼상
				8촌	친왕 내외분

는 덧댄 별지가 있지는 않다. 글씨가 거의 지워져 보이지 않는데, 이 발기가 심하게 훼손되어 ‘왕대비마마’ 부분이 지워져버렸는지, 아니면 수정된 것인지는 정확히 알기 어렵다. ‘왕대비마마’ 부분에 별지를 덧댄 것과 같은 얼룩이 남아 있으며, 순명효황후 민씨(빈마마)가 1904년 9월 28일에 사망하고 효정왕후 홍씨(왕대비마마)는 1903년 11월 15일에 사망하였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더 나중에 죽은 ‘빈마마’는 별지로 덧대어 있고, ‘왕대비마마’만 남아 있는 상황은 이해하기 어렵다. 따라서 여기서는 둘 다 별지를 덧대어 삭제 표시를 한 것으로 보았다. [1척]은 원래의

표3-순종 탄일의 상처림

연번	연도 [등록번호]	상차림 구분	기수/종류	고임 높이	대상
1	1906 [1323]	I	37기/58종	1척 3촌	진어이상, 영친왕
		II	37기/58종	1척	의친왕, 귀비마마
		III	17기/29종 ⁴¹⁾	8촌	순화자가, 군부인
2	1906 [1318]	×	×	1척 3촌	진어두상, 영친왕
				8촌	순화자가
				1척	의친왕, 귀비마마
				8촌	군부인
3	1906 [1319]	×	×	1척 3촌	진어두상, 영친왕
				8촌	순화자가
				1척	의친왕, 귀비마마
				8촌	영친왕, 군부인
4	1906 [1347]	I	33기/50종	8촌	진어이상, 영친왕
				6촌	순화자가
		II	17기/29종	8촌	귀비마마
				6촌	군부인
5	1913 [1349]	I	50기/74종	1척 3촌	덕수궁, 창덕궁[진어상삼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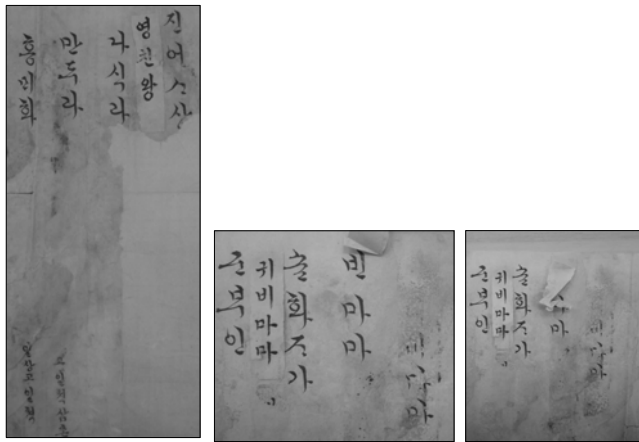


그림1-〈계묘칠월이십오일억만세탄일진어상스찬상불기〉[1275] 중 일부 확대 사진

발기에 ‘일상고일척’으로 써 넣은 것이다.

[1319]에서 의친왕, 영친왕은 나중에 써 넣은 것이다. 다만, 이 발기에

41) 원래 이 발기는 18기/30종의 음식이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척’이 두 번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표3에서는 17기/29종으로 계산하였다.

표4-영친왕 탄일의 상처림

연번	연도 [등록번호]	상차림 구분	기수/종류	고임 높이	대상
1	1898 [1310]	I	15기/20종	×	진어두상, 왕대비마마, 빈마누라, 아기씨, 군부인
2	1899 [1328]	I	28기/49종	8촌	진어두상, 아기씨, 귀인
		II	18기/29종	6촌	빈마누라 , 순화자가, 군부인
3	1902 [1329]	I	14기/26종	×	진어두상, 아기씨, 순비자가
		II	12기/16종	×	왕대비마마 , 빈마누라, 순화자가, 군부인
4	1906 [1346]	I	18기/28종	8촌	진어두상, 영친왕, 귀비마마, 순화자가, 군부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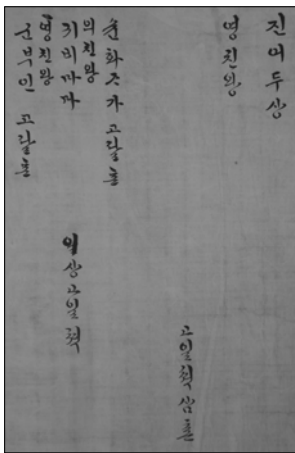


그림2-〈병오이월초팔일천만세 동궁미마탄일진어상스찬상볼기〉 [1319] 중 일부 확대 사진

원래 ‘영친왕’이 적혀 있었는데, 다시 ‘영친왕’을 써 넣은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추가로 써 넣은 ‘영친왕’ 위에는 비점을 찍어놓았는데, 삭제 표시와 관련되는 것이 아닐까 추정해볼 수 있다. ‘의친왕’이 새로 추가되었기 때문에 ‘의친왕’ 뒤에 기록되어 있는 ‘귀비마마’의 아래에는 원래 ‘일상고일척’이었던 것을 ‘이상고일척’으로 고쳐놓은 것으로 보인다. 만일 추가로 써 넣은 ‘영친왕’의 자리가 맞는 것이라면, 영친왕은 귀비 엄씨(귀비마마)보다 아래인 8촌의 상을 받게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탄일 받기에서 영친왕은 귀비 엄씨와 같은 서열인 경우는 있어도 그보다 낮은 서열인 적은 없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1328]의 ‘~~빈마누라~~’는 별지로 덧대어 삭제 표시를 한 것이다. 이 받기는 받기명 원편에 써 있는 ‘경주동신흥동임인동계묘갑진을스’를 통해 1899년부터 1905년까지 반복 사용되었음을 앞서 지적한 바 있다. 순명효황후 민씨(빈마누라)가 1904년 9월 28일에 사망하였으므로, 별지를 덧댄 시기는 그 이후인 것으로 추정된다. [1329]의 ‘~~왕대비마마~~’는 ‘ㄱ’ 표시를 하여 삭제 표시를 한 것이다. 효정왕후 홍씨(왕대비마마)는 1903년 11월 15일에 사망하였으므로, 이 표시는 그 이후인 것으로 추정된다.

표2, 표3, 표4, 표5에 정리된 내용을 보면, 고종과 순종의 탄일 상처림은

표5-귀비 엄씨 탄일의 상차림

연번	연도 [등록번호]	상차림 구분	기수/종류	고임 높이	대상
1	1902 [1352]	I	16기/19종	×	진어상두상, 왕대비마마, 빈마마, 야기씨, 군부인, 순비자가
2	1906 [1353]	I	17기/26종	7촌	상감마마, 동궁마마, 영친왕, 귀비마마
				6촌	순화마마, 군부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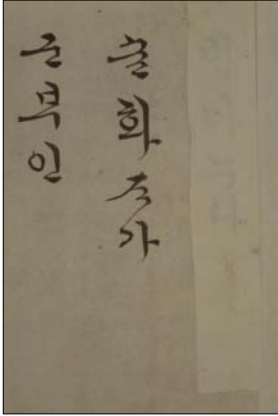


그림3-〈그희구월이십오일천백
세야기시심신어상순님상불기〉
[1328] 중 일부 확대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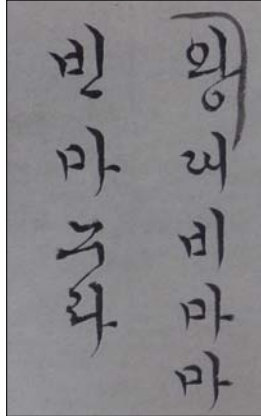


그림4-〈임인구월야기시심신
조반상진어상불기〉[1329]
중 일부 확대 사진

상차림의 유형이나 음식의 고임 높이가 유사하지만 영친왕과 귀비 엄씨의 탄일 상차림은 고종과 순종의 탄일 상차림에 비해서 상 유형이나 음식의 고임 높이에 차이가 있다. 따라서 고종 및 순종의 탄일 상차림과 영친왕 및 귀비 엄씨의 탄일 상차림을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고종과 순종의 탄일 상차림을 살펴보자.⁴²⁾ 고종과 순종의 탄일에는 상차림의 유형을 둘 혹은 셋으로 구분하지만, 1911년 이후에는 하나이다[1330, 1351]. 고종과 순종에게는 유형 1의 상차림이 올려졌다. 음식의 고임 높이는 1척 3촌이나[1275, 1335, 1325, 1323, 1318, 1319, 1349] 1척 2촌으로 나타난다[1337, 1339]. 다만 고종 탄일의 점심상[낮것상]에서는 1척[1351], 순종 탄일의 후물리상에서는 8촌으로 나타난다[1347].⁴³⁾

42) 고종의 탄일 발기인 [1350], [1334], [1330]은 음식의 고임 높이가 기록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음식의 고임 높리와 관련된 일반적인 진술에서 이들 발기는 제외된다. 또한 고종의 탄일 발기인 [1325]와 순종의 탄일 발기인 [1318], [1319]는 음식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음식의 고임 높리는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상차림의 유형과 관련된 일반적인 진술에서 이들 발기는 제외된다.

순정효황후 윤씨는 1911년 이후의 발기에서부터 나타나며, 고종 및 순종과 함께 같은 유형과 같은 고임 높이의 상을 받는다[1351, 1349].

영친왕은 1900년에는 ‘효정왕후 홍씨, 순명효황후 민씨, 경빈 김씨, 연원군부인 김씨, 귀비 엄씨’ 등과 함께 유형 II의 상차림을 받으며[1350, 1334⁴⁴⁾], 서열도 ‘효정왕후 홍씨, 순명효황후 민씨, 경빈 김씨’ 다음이거나 [1350], ‘효정왕후 홍씨, 순명효황후 민씨, 경빈 김씨, 연원군부인 김씨’ 다음이다[1334]. 그러나 1902년 이후에는 변화가 보인다. 1902년에는 고종과 순종에게 올렸던 상차림의 다음 등급인 유형 II의 상차림을 1척으로 받고[1337], 1903년에는 고종 및 순종과 같은 유형 I의 상차림을 음식의 고임 높이만 1척으로 낮춰서 받는다[1275]. 1904년 이후에는 고종과 순종에게 올렸던 것과 같은 유형의 상차림을 받게 되는데, 이때 음식의 고임 높이도 같아진다.⁴⁵⁾

의친왕은 1906년에서야 고종과 순종의 탄일 발기에 보인다. 1906년에는 유형 II의 상차림을 1척으로 받으며[1335, 1323]⁴⁶⁾ 1911년에는 연원군부인 김씨와 함께 고종 및 순종에게 올린 것과 같은 상차림을 받는데, 음식의 고임 높이만 8촌으로 낮추어 받는다[1351].

효정왕후 홍씨(왕대비마마), 순명효황후 민씨(빈마누라, 빈마마), 경빈 김씨(순화자가), 연원군부인 김씨(군부인), 귀비 엄씨(귀인, 순비자가, 순비마마, 귀비마마)는 유형 II나 유형 III의 상차림을 받았다. 효정왕후 홍씨, 순명효황후 민씨에 올린 음식의 고임 높이는 8촌이었다[1337, 1275].⁴⁷⁾ 경빈 김씨와 연원군부인 김씨에 올린 음식의 고임 높이는 8촌이거나[1337,

43) 본고의 대상이 되는 발기 중 후물리상은 고종의 탄일 발기인 [1334]도 있다. 그러나 이 발기에는 음식의 고임 높이가 기록되어 있지 않아, 순종의 탄일 발기의 후물리상인 [1347]에 나타난 음식의 고임 높이가 변화된 이유가 후물리상이기 때문인지는 단언하기 어렵다.

44) [1350], [1334]는 음식의 고임 높이가 기록되어 있지 않다.

45) 단 1906년 고종의 탄일 발기인 [1335]에서만 고종과 순종에게 올렸던 상차림의 다음 등급인 유형 II의 상차림을 1척의 높이로 받는다. 고종의 탄일 발기인 [1335]는 의친왕, 영친왕, 귀비 엄씨에게 유형 II의 상차림을 1척으로 올린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같은 해(1906년)이면서 고종의 탄일 발기인 [1325]에서는 영친왕은 고종 및 순종과 같이 1척 3촌의 상을 받고, 의친왕과 귀비마마는 1척의 상을 받는다고 되어 있다. 고종 및 순종의 탄일 발기에서 귀비 엄씨는 영친왕과 같은 등급의 상차림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1335]의 기록이 특이하다고 볼 수 있다.

46) 음식의 구체적인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1325], [1318], [1319]에서도 의친왕은 1척의 높이로 상을 받는다.

47) 효정왕후 홍씨는 1903년 11월 15일에 사망하고, 순명효황후 민씨는 1904년 9월 28일에 사망하였다. 따라서 이들은 1903년까지만 발기에 나타난다.

1275, 1335, 1325, 1323, 1318, 1319) 7촌이었는데[1339], 순종 탄일의 후물리상에서는 6촌이었다[1347]. 귀비 엄씨의 경우는 시기에 따라 상차림 유형과 음식의 고임 높이가 달라진다.⁴⁸⁾ 1904년까지는 효정왕후 홍씨, 순명효황후 민씨, 경빈 김씨, 연원군부인 김씨와 같은 유형의 상차림을 같은 고임 높이로 받았다. 그러나 1906년에는 의친왕, 영친왕과 같은 유형 II의 상차림을 1척의 높이로 받았으며[1335, 1323], 순종 탄일의 후물리상에서는 유형 II의 상차림을 8촌의 높이로 받았다[1347].

이들의 서열에서 변화가 나타나는 것은 경빈 김씨와 귀비 엄씨이다. 1903년까지 경빈 김씨와 귀비 엄씨는 같은 고임 높이의 상차림을 받았으며, '경빈 김씨 → 귀비 엄씨'의 순서였다. 1904년에도 음식의 고임 높이는 같았으나, '귀비 엄씨 → 경빈 김씨'의 순서로 바뀐다. 1906년이 되면, 귀비 엄씨가 경빈 김씨보다 더 높은 고임 높이의 상을 받게 된다. 그러나 발기에 따라 그 순서는 '귀비 엄씨 → 경빈 김씨'이기도 하고, '경빈 김씨 → 귀비 엄씨'이기도 하다.

1900년: 왕대비마마 → 빈마누라 → **순화자가** → 군부인 → **귀인**[1350, 1334]

1902년: 왕대비마마 → 빈마누라 → **순화자가** → 군부인 → **순비자가**[1337]

1903년: 왕대비마마 → 빈마마 → **순화자가** → **귀비마마** → 군부인[1275]

1904년: **귀비마마** → **순화자가** → 군부인[1339]

1906년: **순비마마** → **순화자가** → 군부인[1335]

순화자가 → **귀비마마** → 군부인[1325, 1318, 1319, 1347]

귀비마마 → **순화자가** → 군부인[1323]

다음으로 영친왕과 귀비 엄씨의 탄일 상차림을 살펴보자. 영친왕과 귀비 엄씨의 경우 음식의 기수와 종류는 고종이나 순종의 경우에 비해 매우 적다. 상차림의 구분은 영친왕의 경우에만 나타나는데, 1898년에는 구분되지 않고[1310], 1899년 이후 두 유형으로 나뉘다가[1328, 1329] 다시 1906년에는 한 유형으로 나타난다[1346]. 음식의 고임 높이도 고종이나 순종의 경우에 비해 낮아서 영친왕의 탄일 상차림에서는 8촌이나 6촌으로 구분하고[1328, 1346], 귀비 엄씨의 탄일 상차림에서는 7촌이나 6촌으로 구분한다[1353].

48) 귀비 엄씨는 1911년 7월 20일에 사망하였으므로, 1911년의 발기 이후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영친왕과 귀비 엄씨의 상차림에 나타나는 특징 중 하나는 영친왕과 귀비 엄씨가 고종이나 순종의 탄일 발기와는 다른 서열을 보여준다는 점이다. 고종이나 순종의 탄일 발기에서 영친왕은 1902년에서야 고종과 순종에게 올렸던 상차림의 바로 아래 등급의 상차림을 받고, 1904년 이후에 고종, 순종과 같은 등급의 상차림을 받았다. 귀비 엄씨의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도 고종, 순종과 같은 등급의 상차림을 받지 않았다. 그런데 귀비 엄씨가 나타나지 않는 [1310]을 제외하면, 영친왕과 귀비 엄씨의 탄일 상차림에서 영친왕과 귀비 엄씨는 언제나 고종, 순종과 같은 등급의 상차림을 받는다.

2. 구체적인 음식의 비교

고종, 순종, 영친왕, 귀비 엄씨의 탄일 발기에 올린 음식을 순서대로 살펴보기로 한다.⁴⁹⁾ 고종의 탄일 발기 중 비교 대상이 되는 발기는 6건으로서, 1900년의 [1350], 1902년의 [1337], 1903년의 [1275], 1904년의 [1339], 1906년의 [1335], 1911년의 [1351]이 해당된다.

먼저 유형 I의 상차림에 올려진 음식을 보면, 표6과 같다. 유형 I의 상차림은 32-35기/50-56종으로 나타나는데⁵⁰⁾, 변화가 많이 나타나는 것은 과정류와 과일류이며 그 외의 것은 큰 변화가 없다. 점심생낫것생인 [1351]의 음식은 다른 경우와 별 차이가 없다. 후물리상인 [1334]를 같은 해의 [1350]과 비교해보면 떡류, 음청류, 양념류는 동일하다. 그러나 주식류⁵¹⁾, 찬물류⁵²⁾, 과일류⁵³⁾에서는 약간의 변화가 있으며, 과정류의

49) 이 글에서 음식의 분류는 이효지·한복려·정길자, 『조대비 만경전 팔순잔치 고종 정해년 진찬의궤』(한국문화재보호재단, 2009)를 따랐다. 여기에서 확인되지 않는 음식은 이효지·윤서석, 「朝鮮王朝後期の 宮中宴會飲食의 分析的 考察」(『대한가정학회지』 제23권 4호, 1985, 79-100쪽); 이효지·윤서석, 「朝鮮時代 宮中宴會中 饌物類의 分析的 研究」(『한국식문화학회지』 제1권 2호, 1986, 101-115쪽)를 따랐다.

50) 고종 탄일 발기의 유형 I에 해당되는 정확한 기수/종수는 III. 1.의 표2에서 확인할 수 있다.

51) 주식류에는 ‘냉면, 온면’이 있는데, [1350]의 ‘면’이 ‘**온면**’으로 교체되어 있다.

52) 찬물류에서 [1350]과 [1334]를 비교하여 차이가 나는 것을 순서대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편육, 족속편] → [편육, **족편**]; 전복효, 각식느름적 → [**전복효, 느름적**]; ‘초계탕’ 삭제.

53) 과일류에서 [1350]과 [1334]를 비교하여 차이가 나는 것을 순서대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사과, 닌금, 적니, [승도, 산사] → [닌금, 사과], [적니, 승도]; ‘산사’ 삭제.

표6-고종의 탄일 상차림: 유형 I 비교

성격		음식
주식류	공통	냉면
	교체	면[1350] → 온면[1337, 1275, 1339, 1335, 1351]
찬물류	공통	각식절육, 전복초, 연계증, [심선전유우, 회전], [양전유우, 간전유우], [편육, 족숙편], [데숙편, 데튀], 각식어취, 임즈슈잡탕, 초계탕
	교체	각식느름적[1350, 1337, 1275, 1339] → 느름적[1335] → 각식느름적[1351]
떡류	공통	[임즈쉴츠시르편, 녹두츠시르편, 당귀외시르편, 빅설고, 약식]
	삭제	[대조조약, 청조약, 석이단주, 밀밥, 국화엽전][1350] → [대조조약, 청조약, 밀밥, 국화엽전][1337] → [대조조약, 청조약, 석이단주, 밀밥, 국화엽전][1275, 1339, 1335] → [대조조약, 청조약, 밀밥, 국화엽전][1351]
과정류	공통	[홍미화, 빅미화, 온빅즈송즈]연사과, [홍세강반, 빅세강반, 말빅즈간정, 각식숙실과, 각식정과
	교체	숙식다식[1350] → 각식다식[1337, 1275, 1339, 1335, 1351]
	기수 변화	[다식과, 만두과][1350, 1337] → 다식과, 만두과[1275, 1339, 1335] → [다식과, 만두과][1351]
	추가	[사당, 굴병, 각식당][1275, 1339, 1335, 1351]
과일류	공통	사과, [승도, 산사]
	교체	[싱니, 포도][1350, 1337, 1275, 1339, 1335] → [싱니, 싱늘][1351] 사과[1350, 1337, 1275, 1339, 1335] → 조홍[1351]
	기수 변화	넌금, 적니[1350] → [넌금, 적니][1337, 1275, 1339, 1335, 1351]
	추가	[농안, 녀지][1275, 1339, 1335, 1351]
음청류	공통	산사슈정과, 슈단
양념류	공통	청, 초장, 개즈

변화가 크게 나타난다.⁵⁴⁾

고종의 탄일 발기에서 상차림이 세 유형으로 구분되는 경우는 1902년의 [1337]과 1906년의 [1335]이다.⁵⁵⁾ [1337]의 유형 II의 음식을 보면, 주식류·떡류·과일류는 유형 III과 동일하고⁵⁶⁾ 찬물류는 유형 III과 더 유사한 데 비해⁵⁷⁾, 과정류는 유형 I에 훨씬 더 가깝다.⁵⁸⁾ 그 외 음청류의 산사슈정

54) [1334]의 과정류에는 [등약과, 등만두과], [삼식연사과, 삼식간정], 각식숙실과, 각식정과, 숙식다식이 있는데, 이것은 [1350]과 거의 유사한 점이 없을 정도로 다르다.

55) 고종 탄일 발기의 유형 II에 해당되는 정확한 기수/종수는 III. 1.의 표2에서 확인할 수 있다.

56) 주식류에는 '냉면', 떡류에는 '당귀츠시르편, 녹두츠시르편, 임즈외시르편, 대조조약, 청조약, 석이단주, 밀밥], 약식', 과일류에는 '싱니, 사과, 넌금, 승도, 적니, 포도]가 올랐다.

57) 찬물류에서 유형 I과 동일한 것은 '각식절육'뿐이다. 유형 III과 동일한 것은 '연계증,

표7-고종의 탄일 상차림: 유형 II 및 유형 III 비교

성격		음식
주식류	공통	냉면
	추가	온면 [1339]
찬물류	공통	[싱선전유우, 양전유우, 히전], [편육, 족속편], 각식어취, 임즈슈잡탕
	기수 변화/추가	[연계증, 느름적][1350] → 연계증, [전복초 , 느름적][1337, 1275, 1339, 1335]
떡류	공통	약식
	삭제/교체	[당귀초시러편, 녹두초시러편, 임즈외시러편, 대조조약, 청조약, 석이단조, 밀밥][1350, 1337] → [당귀초시러편, 녹두초시러편, 임즈외시러편, 대조조약, 청조약, 밀밥][1275] → 각식편 [1339] → [당귀초시러편, 녹두초시러편, 임즈외시러편, 대조조약, 청조약, 밀밥][1335]
과정류	공통	유밀과, 각식정과
	교체	[스식다식 , 각식숙실과][1350] → [각식다식 , 각식숙실과][1337, 1275, 1339, 1335]
과일류	교체	[싱니, 사과, 닌금, 승도, 적니, 포도][1350, 1337, 1275] → 각식상실과 [1339] → [싱니, 닌금, 사과, 승도, 적니, 포도][1335]
음청류	공통	산사슈정과, 슈단
양념류	공통	청, 초장, 개즈

과, 슈단, 양념류의 ‘청, 초장, 개즈’는 유형 I과 유형 III에 공통된 것이다. 따라서 [1337]의 유형 II는 과정류를 제외하면, 유형 III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1335]의 유형 II의 음식은 ‘각식절육’을 제외하면, [1335]의 유형 I과 동일하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고종의 탄일 발기에서 마지막으로 살펴볼 상차림은 세 유형으로 구분되는 경우의 유형 III과 두 유형으로 구분되는 경우의 유형 II이다. 전자에는 1900년의 [1350], 1903년의 [1275], 1904년의 [1339]가 해당되고, 후자에는 1902년의 [1337], 1906년의 [1335]가 해당된다. 여기에 해당하는 상차림은 17-19기/24-33종으로 나타나는데⁵⁹⁾, 이는 앞서 살펴본 유형 I에 비해 규모가 축소된 것이다. 또한 음식의 종류도 많이 달라져 있다. 점심상(낫것상), 후물리상의 차이도 그리 크지 않다.⁶¹⁾

[전복초, 느름적], [싱선전유우, 양전유우, 히전]이며, 유형 I 및 유형 III과 동일한 것은 ‘편육, 족속편, 각식어취, 임즈슈잡탕’이다.

58) 과정류에서 유형 I과 동일한 것은 ‘다식과, 만두과, 각식다식, 각식숙실과, 각식정과, [홍제강반, 빅제강반, 말빅주]간정’이다. 그 외에 [홍미화, 빅미화]연사과’는 유형 I의 ‘홍미화, 빅미화, 온빅즈송즈연사과’에서 ‘온빅즈송즈연사과’만 빠진 것이므로 유형 I과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59) 이에 해당하는 유형의 정확한 기수/종수는 III. 1.의 표2에서 확인할 수 있다.

60) ‘오미즈병’은 떡류로 분류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1323]과 [1349]에서 과일인

표8-순종의 탄일 상처림: 유형 I 비교

성격		음식
주식류	공통	면, 만두
찬물류	공통	각식절육, 전복초, 잡빔, [데티, 데숙편], 각식느름, 각식회, 슈란, 청포, 초계탕
	교체	잡탕 → 잡탕(산선노)
	기수 변화	[심선전유우, 히습전], [양전유우, 간전유우] → 심선전유우, 히습전, 양전유우, 간전유우
	기수 변화/교체	[편육, 족편] → 편육, 족숙편
떡류	공통	약식
	교체/삭제/추가	[북근쫄시르편, 녹두초시르편, 당귀피시르편, 빅설고] → [두탑편, 당귀시르편, 밀설고]
	기수 변화/추가	[대조조약, 청조약, 싱강단즈, 석이단즈, 식산병] → [대조조약, 청조약, 황조약], [싱강단즈, 석이단즈, 식산병]
과정류	공통	대약과, [사당, 굴병, 각식당], 각식정과
	교체	대만두과 → 만두과 , [홍민화, 빅민화, 온빅조송]연사과 → [홍민화, 빅민화, 온빅조]연사과
	교체/삭제	[홍세강반 , 말빅즈, 임즈, 태말, 당귀말]간정-[임즈, 태말, 당귀 , 말빅즈]간정
	삭제	스식다식, 각식숙실과 [1323]
과일류	공통	[농안, 녀지], [싱니, 오미조병 ⁶¹], 준수, 싱늘, 싱대조
	추가	황늘, 왜감즈, 사과 [1349]
음청류	공통	산사슈정과, 싱니숙, 원소병
양념류	공통	청, 초장, 개즈

순종의 탄일 받기 중 비교 대상이 되는 받기는 2건으로서, 1906년의 [1323]과 1913년의 [1349]가 해당된다.⁶²⁾ [1323]은 세 유형으로 상처림을 구분하였는데, 유형 II는 유형 I 과 기수와 종수가 같고, 음식의 고임

⁶¹⁾ '싱니'와 한 그릇에 올리는 것으로 되어 있다. 여기서는 이를 따라 과일류로 분류해두었다.

⁶¹⁾ 주식류, 과일류, 음청류, 양념류는 [1350]과 [1334]가 동일하다. [1350]과 [1334]를 비교하여 차이가 나는 것을 순서대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찬물류에서는 [편육, **족숙편**] → [편육, **족편**], 임즈숙잡탕 → **잡탕**과 '전복초'가 추가됨으로써 [연계증, 느름적] → 연계증, [**전복초**, 느름적] 으로 바뀌었다. 떡류에서는 [당귀초시르편, 녹두초시르편, 임즈피시르편, 대조조약, 청조약, 석이단즈, 밀밥] → **각식편**으로 바뀌었다. 과정류에서는 '유밀과'가 삭제되었으며, '스식다식' → **각식다식**으로 바뀌었다.

⁶²⁾ 순종 탄일 받기의 정확한 기수/종수는 III. 1.의 표3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9-영친왕의 탄일 상차림: 유형 I[1310]과 유형 II[1328]의 비교

성격		음식
주식류	공통	면
	추가	만두 [1328]
찬물류	공통	[전복초, 느름적], [편육, 족편], 잡뽕, 잡탕
	교체	[싱선전유우, 양전유우, 허전] → [싱선전유우, 양전유우, 싱합전]
	추가	각식어취 [1328]
떡류	공통	각식편, 약식
과정류	공통	[각식다식, 각식숙실과, 각식정과
	추가	유밀과 [1328]
과일류	교체	각식성실과 → [생나, 포도, 유즈, 석뉴, 탐시, 슈시, 싱늘]
음청류	교체	화취 → 싱니숙
양념류	공통	청, 초장, 개즈

높이만 다르다. 구체적인 음식에도 유형 I의 ‘붓근팟시르편’이 유형 II에서 ‘붓근팟츠시르편’으로 바뀌어 있을 뿐 다른 것은 동일하다. [1323]의 유형 III과 후물리상인 [1347]의 유형 II는 기수, 종수, 그리고 음식의 종류까지 같다.⁶³⁾

순종의 탄일 상차림 중 [1323]의 유형 I 과 [1349]의 유형 I 을 비교하면, 표8과 같다. [1349]의 유형 I 은 기수나 종수가 훨씬 더 많아졌기 때문에 앞서 살펴본 고종의 탄일 상차림에 비해 변화의 폭이 크다. 후물리상인 [1347]의 유형 I 과 [1323]의 유형 I 은 차이가 있는 편이다. 주식류와 양념류는 같다. 떡류, 과일류, 음청류의 차이는 크지 않지만⁶⁴⁾ 찬물류⁶⁵⁾, 과정류⁶⁶⁾의 차이는 큰 편이다.

- 63) 주식류에는 ‘면’, 찬물류에는 [전복초, 느름적], [싱선전유우, 양전유우], [편육, 족편], 슈란, 청포, 잡탕’, 떡류에는 [썰츠시르편, 녹두츠시르편, 당귀피시르편, 대조조약, 석이단즈, 식산병], 약식’, 과정류에는 ‘유밀과, [각식다식, 각식숙실과, 각식정과’, 과일류에는 [싱니, 준시, 싱늘, 오미즈병], 음청류에는 ‘산시슈정과’, 양념류에는 ‘청, 초장, 개즈’가 올랐다.
- 64) 떡류에서는 [1323]의 ‘붓근팟시르편, 빅설고’이 ‘썰츠시르편, 빅두피시르편’으로 교체되었다. 과일류에서는 [1323]의 [농안, 너지]가 삭제되었으며, ‘양사과’가 추가되었다. 음청류에서는 [1323]의 ‘원소병’이 삭제되었다.
- 65) [1323]의 ‘초계탕’이 삭제되었으며, ‘잡뽕’은 ‘씩뽕’으로 교체되었다. 그 외 ‘기수 변화/삭제’에 해당하는 것은 [편육, 족편], [데티, 데숙편] → [편육, 데티], 족편’이다.
- 66) [1323]의 ‘대만두과, [사당, 꿀병, 각식당]은 삭제되었다. ‘교체’에 해당되는 것은 [홍떡화, 빅떡화, 온빅즈송즈]연사과 → [홍세강반, 빅세강반, 송빅즈송즈]연사과’이다. ‘교체/추가’에 해당되는 것은 ‘대약과 → [등약과, 등다식과]’이다. ‘삭제/추가’에 해당되는 것은 [홍세강반, 말빅즈, 임즈, 태말, 당귀말]간정 → [말빅즈, 임즈, 홍말, 태말]간정’이다.

표10-귀비 엄씨의 탄일 상차림: 유형 I 비교

성격		음식
주식류	공통	면, 만두
찬물류	공통	[전복초, 느름죽], 잡뽕, [편육, 죽편], 신선노탕
	기수 변화/추가	[심선전유오, 양전유오] → [심선전유오, 양전유오, 히슴편]
떡류	공통	각식편, 약식
과정류	공통	유밀과, 각식정과
	추가	[각식다식, 각식숙실과][1353]
과일류	교체	각식실과 → [싱니, 유즈, 석뉴, 슈시, 싱늘]
음청류	공통	화치
양념류	공통	청, 초장, 개즈

영친왕의 탄일 발기 중 비교 대상이 되는 발기는 3건으로서, 1898년의 [1310], 1899년의 [1328], 1906년의 [1346]이 해당된다.⁶⁷⁾ 이 중 [1328]만이 상차림을 두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기수, 중수, 음식의 종류를 비교해보면, [1328]의 유형 II가 [1310]과 [1346]의 유형 I 과 더 유사하다. [1346]의 유형 I 과 [1328]의 유형 II의 비교는 이 점을 더욱 분명히 해준다. [1346]의 유형 I 에서 보이는 ‘팀시, 슈시’가 [1328]의 유형 II에서 ‘팀슈시’로 나타나는 점만 제외하면, 이 두 유형의 음식은 동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영친왕의 탄일 발기에 나타난 음식의 비교는 표9와 같이 [1310]의 유형 I 과 [1328]의 유형 II를 중심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1328]의 유형 I은 다른 경우에 비해 음식의 기수, 중수, 종류가 더 많다.⁶⁸⁾ 1902년의 [1329]는 조반상이라는 점에서 다른 발기와 차이가 있다. 그런데 1899년의 [1328]이 1899년부터 1905년까지 반복되어 사용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1329]는 [1328]과 비교될 수 있다. 각각 두 유형으로 구분된 이 발기들의 상차림을 비교해보면, 조반상인 [1329]에는 유형 I 과 유형 II 모두 과정류, 과일류, 음청류, 그리고 양념류 중 ‘청’을 올리지 않았다. 이 외에 [1329]의 유형 I 에

67) 영친왕 탄일 발기의 정확한 기수/중수는 III. 1.의 표4에서 확인할 수 있다.

68) [1328]의 유형 II와 비교해보면 주식류, 양념류, 음청류는 동일하다. 찬물류에서는 ‘각식절육, [데티], [데숙편]’이 추가되었으며, ‘간전유오’가 추가되어 유형 II의 [심선전유오, 양전유오, 싱합전]이 [심선전유오, 싱합전], [양전유오, 간전유오]로 바뀌었다. 떡류에서는 [꿀츠시르편, 녹두츠시르편, 당귀피시르편, 낭식조약, 빅설고, 석이단즈, 늘단즈, 화전]이 추가되었다. 과일류에서는 [농안, 너지]가 추가되었으며, ‘싱대조’가 추가되어 유형 II의 [싱니, 포도, 유즈, 석뉴, 팀시, 슈시, 싱늘]이 [싱니, 포도], [유즈, 석뉴], [팀시, 슈시], [싱늘, 싱대조]로 바뀌었다.

는 [1328]의 찬물류 중 '각식절육'이 빠져 있다.

귀비 엄씨의 탄일 발기는 1902년의 [1352]와 1906년의 [1353]이다. 이들은 상차림의 유형이 구분되지 않았으며, 음식도 큰 차이가 없다.

IV. 맺음말

이 글은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 소장된 궁중 음식 발기 중 탄일 발기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 글에서 대상으로 한 탄일 발기는 모두 20건으로서, 고종의 탄일 발기 9건, 순종의 탄일 발기 5건, 영친왕의 탄일 발기 4건, 귀비 엄씨의 탄일 발기 2건이다. 이들 발기는 발기명이 분명하게 적혀 있어 날짜와 관련 행사의 성격을 비교적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날짜가 달리 적힌 경우도 있었는데, 이는 음력과 양력의 사용 문제와 관련된 것이었다.

이 글에서는 탄일 발기에서 파악해야 할 중요한 문제를 셋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첫째는 기본적인 서지와 관련된 부분이다. 하나의 행사와 관련된 발기가 여러 건 있을 경우 각 발기의 차이는 무엇인지, 하나의 행사와 관련된다고 하더라도 시기가 달라지는 경우 각 발기의 차이는 무엇인지에 주목하여 살폈다. 둘째는 발기에 나타난 왕실 인물들의 관계나 서열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셋째는 왕실에 올린 음식을 비교함으로써 관련 행사 혹은 음식이 올려지는 대상의 차이에 따른 음식의 차이를 보였다.

궁중 음식 발기는 조선 왕실의 음식문화와 이와 관련된 여러 양상을 살펴보는 데 중요한 자료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성격을 지닌다고 볼 수 있는 의궤류에 비해 큰 관심을 받지 못해왔다. 이는 궁중 음식 발기의 기록 자체가 가진 성격에 기인했을 수 있다. 궁중 음식 발기에 기록된 내용들은 의궤류에서 엿볼 수 있는 왕실 행사와 비교해볼 때, 규모나 내용이 소략한 경우가 많고, 경우에 따라서는 발기에 기록된 왕실 행사가 의궤류에 기록된 것에 비해 덜 중요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궁중 음식 발기를 통해서 의궤류에서 볼 수 없었던 조선 왕실의 다양한 일상을 엿볼 수 있고, 한글로 표기된 음식명이나 관직명을 통해

당시의 문자생활을 엿볼 수 있다는 점은 궁중 음식 발기가 가지는 사료적 가치를 증명하고도 남음이 있다. 궁중 음식 발기가 지닌 사료적 중요성, 즉 왕실의 일상에 대한 연구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발기가 기록된 당시의 역사적 상황과 관련하여 그 시기와 배경을 면밀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고종실록』, 『순종실록』, 『순종실록부록』(<http://sillok.history.go.kr>).

『승정원일기』(<http://db.itkc.or.kr/>).

- 〈갑진칠월이십오일역만세탄일진어상불기〉[1339].
- 〈경즈칠월이십오일천만세탄일진어상불기〉[1350].
- 〈경즈칠월이십육일후물니진어상불기〉[1334].
- 〈계묘칠월이십오일역만세탄일진어상스찬상불기〉[1275].
- 〈계특이월십팔일동궐마마탄일진어상불기〉[1349].
- 〈기희구월이십오일천백세아기시싱신어상손님상불기〉[1328].
- 〈무술구월이십오일진어상손님상불기〉[1310].
- 〈병오구월이십오일영친왕천백세싱신음식진어상불기〉[1346].
- 〈병오십일월초육일귀비마마천백세싱신진어상불기〉[1353].
- 〈병오이월초구일천만세동궁마마탄일후물니진어상불기〉[1347].
- 〈병오이월초팔일천만세동궁마마탄일진어스찬상불기〉[1323].
- 〈병오이월초팔일천만세동궁마마탄일진어상스찬상불기〉[1318].
- 〈병오이월초팔일천만세동궁마마탄일진어상스찬상불기〉[1319].
- 〈병오칠월이십오일역만세탄일진어상스찬상불기〉[1325].
- 〈병오칠월이십오일역만세탄일진어상스찬음식불기〉[1335].
- 〈신희칠월십육일만수성결탄일낮것상불기〉[1351].
- 〈신희칠월십육일역만세탄일낮것상불기〉[1330].
- 〈임인구월아기시싱신조반상진어상불기〉[1329].
- 〈임인십일월초오일순비즈가싱신음식불기〉[1352].
- 〈임인칠월이십오일역만세탄일진어상스찬상불기〉[1337].

김봉좌, 「조선시대 유교의례 관련 한글문헌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1.

김향숙, 「장서각 소장 발기류의 서지적 특징」. 『인문학자가 차린 조선왕실의 식탁』(한식 세계화를 위한 조선왕조궁중음식고문헌 심포지엄 발표집), 2012, 85-98쪽.

박보연, 「장서각 소장 음식 발기에 나타난 음식명에 대한 고찰」. 『인문학자가 차린 조선왕실의 식탁』(한식세계화를 위한 조선왕조궁중음식고문헌 심포지엄 발표집), 2012, 151-159쪽.

이성우, 「조선조의 궁중음식건기에 관한 고찰」. 『한국식문화학회지』 3권 1호, 1988, 29-49쪽.

- 이효지·윤서석, 「朝鮮王朝後期の 宮中宴會飲食의 分析的 考察」. 『대한가정학회지』 제23권 4호, 1985, 79-100쪽.
- _____, 「朝鮮時代 宮中宴會 中 饌物類의 分析的 研究」. 『한국식문화학회지』 제1권 2호, 1986, 101-115쪽.
- 이효지·한복려·정길자, 『고종 정해년 진찬의궤-조대비 팔순잔치』. 한국문화재보호재단, 2009.
- 한복진·이성우, 「朝鮮朝 宮中 誕日床 발기의 分析的 研究」. 『한국식문화학회지』 4권 1호, 1989, 21-37쪽.

국 문 요 약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는 왕실의 행사에 소용되는 물품과 수량, 그리고 이들을 지급 대상을 기록한 발기가 다수 소장되어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궁중 발기 중에서 탄일 발기 20건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고종의 탄일 발기 9건, 순종의 탄일 발기 5건, 영친왕의 탄일 발기 4건, 귀비 엄씨의 탄일 발기 2건이다. 탄일 발기는 왕실 인물의 탄일 및 생신을 축하하면서 왕실에 올리는 음식과 신하에 내리는 음식을 기록한 것이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성격을 지니는 탄일 발기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문제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첫째, 각 발기의 기본적인 성격을 파악하는 것이다. 동일한 날짜에 치러진 동일한 행사와 관련된 발기가 여러 건 있을 경우 각 발기의 차이는 무엇인가, 동일한 행사와 관련된다고 하더라도 시기가 달라지는 경우 각 발기의 차이는 무엇인가에 주목하여 고찰하였다. 둘째, 왕실 인물의 지칭 변화나 서열 변화를 살펴보았다. 셋째, 왕실에 올린 음식을 비교함으로써 관련 행사 혹은 음식이 올려지는 대상의 차이에 따른 음식의 차이를 보였다.

투고일 2012. 7. 18.

수정일 2012. 8. 13.

게재 확정일 2012. 8. 23.

주제어(keyword) 발기(Balgi), 탄일 발기(Balgi generated for birthday anniversaries of the royal family members), 궁중음식(royal dishes)